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년 5월 25일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4월 24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3년 5월 3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1993년 5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과장 한옥현)

가. 제안 이유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정 정보 공개 요청인에 대한 비용 징구

나. 주요 골자

행정 정보의 사본 열람 등에 따른 비용을 부산직할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청구인에게 비용을 징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무상)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1993. 1. 1.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기 공포됨에 따라 민원인 또는 단체가 행정 정보공개 요청시 소요되는 비용을 징구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없어 부산직할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요율에 관하여 명시된 각 항 중 4항과 5항을 따로 불임과 같이 신설하므로써 행정정보공개 요청시 발급 비용에 대한 제도적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예에 따른 요금 내역을 보면 각 분야 공히 실비로 부담시키므로 행정정보공개 요청인에 대한 부담을 줬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